

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7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05. 02.

김석한 의원 등 5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5. 16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5. 31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김석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고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“치유농업” 등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및 제3조)
- 2) 고성군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3)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4) 전문가의 자문 등 교육 강사 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육성에 관한 법률」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24호
 - 예고기간: 2024. 5. 8.(수) ~ 5. 13.(월) [5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고성군 농업·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 ~ 제2조)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3조 ~ 제4조)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으로, 지역여건에 맞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,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6조)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,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7조)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으로, 치유농업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, 이에 필요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5. 31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